漁船檢査에 對한 內容과 節次

船體課長　孫　英　一

1. 槪　要

漁船은 水產物의 生產을 爲한 手段인 것이다. 따라서 水產業의 合理的인 發展을 위하여 制定公布된 漁船法은 漁船의 建造調整과 登錄業務 및 檢査業務를 水產에 관한 專擔部署인 水產廳으로 일원화하여 漁船의 檢査業務는 漁船協會에서 代行하게 되었으며, 漁船은 규모가 적은데 비하여 孤立無援의 상태에서 多數의 漁夫를 승선시켜 多量의 漁獲物을 積載하고, 악천후 속에서 衝突 坐礁 沈沒의 위험부담을 안고 操業하는 特性에 따라 操業能率을 제고시키면서 人命과 財貨의 安全保護에 必要한 性能, 構造및 設備를 갖추므로서 海上에서의 모든 위험을 事前에 防止 할수 있도록 造船되고 補修 維持 될수 있도록 漁船檢査를 行하는 것으로, 漁民의 人命및 財產의 保護에 目的을 두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에 대한 檢査의 節次와 內容에 대하여 記述하고저 한다.

2. 漁船協會의 檢査機能

1) 漁船의 諸檢査, 製造檢査및 檢査證書 發給
2) 漁船의 積量測定, 改測業務 및 積量測定證明書 發給
3) 漁船의 建造를 위한 設計圖面의 審査및 事前圖面 檢討
4) 漁船用 設備의 豫備檢査와 豫備檢査合格證印 및 證明書發給
5) 漁船檢査證書등의 改書및 再交付

3. 檢査의 對象 및 種類

가. 檢査의 對象

1) 全動力 漁船
2) 5屯 以上의 無動力 漁船

나. 檢査의 種類 (表 1 參照)

表 〈1-1〉

檢査의 種類와 檢査事項

區　分	時　期	檢　査　事　項
定期檢査	1. 최초로 航行에 사용할때 2. 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이(4年) 滿了된 때	船體, 機關, 揚錨, 繫船, 救命, 消防, 居住, 衛生 設備 揚貨裝置, 電氣設備, 通信設備, 滿載吃水線, 航海用具, 漁撈設備, 處理加工設備
特別檢査	1. 학생의 敎習을 위하여 임시로 敎習生을 乘船시키고자 할 때 2. 임시로 便乘者를 運送하고자 할 때 3. 漁具 및 貨物을 운송하고자 할 때	임시로 人員을 수용할 설비
臨時檢査	1. 滿載吃水線을 표시하고자 할 때	지적사항 및 船主의 受檢 신청사항

	2.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를 설치하거나 변경시 3. 臨時航行證 교부를 받고자 할 때 4. 檢査證書의 記載 사항 변경시 5. 특정사항에 관하여 지적받은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製造檢査	漁船 건조 착수시부터 竣工시까지	漁船法제3조(漁船의 施設)에 對한 全工程에 對한 同法제17조(製造檢査)의 事項.
豫備檢査	漁船用設備	漁船에 設置前 生産工場의 品質檢査
復原性檢査	定期檢査時	航行上 위험방지

〈表 1—2〉

	對象	區分	種類	時期	檢査事項
中間檢査	50屯以上	船齡 15年以上	第1種	定期,1種中間檢査日부터 12月마다	法第3條의 設備와 滿載吃水線
		船齡 15年以下	第1種	定期,1種中間檢査日부터 24月마다	
			第2種	定期,1種中間檢査日부터 12月마다	揚貨裝置 滿載吃水線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

※ 漁船의 設備라 함은 漁船法 제3조(漁船의 施設)에 의거 아래와 같다.

1) 船體
2) 檢關
3) 排水設備
4) 帆裝
5) 操舵, 繫船, 揚錨의 設備
6) 電氣設備
7) 通信設備
8) 漁撈設備
9) 救命, 消防, 居住, 衛生設備 및 航海用具
10) 其他設備
11) 전 각호 외에 水產廳長이 특히 정하는 設備

4. 漁船檢査의 節次

가. 新造船의 檢査

5屯 미만의 無動力 漁船은 檢査를 받지 않는다. 建造後에 市·郡에서 登錄을 하면 된다.

1) 50屯 미만의 動力 및 無動力船

가) 20屯미만 船長 15M미만 動力漁船과 5톤 以上, 20톤 미만 船長 15M 미만의 無動力漁船은 市·郡의 發註許可를 받고

나) 20톤 以上 船長 15M 以上, 50톤 미만의 動力漁船과 無動力漁船은 實需要者(어민)가 市·郡의 發註許可와 建造者(造船所)의 名義로 商工部(市·道의 工業課)의 建造承認을 받아 漁船을 建造完了하여 漁船協會에 다음의 事項에 對하여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① 積量測定을 申請하여 積量測定表및 積量測定證明書를 發給 받아 法院登記및 市·郡에 登

表 2　　新造漁船檢査 50屯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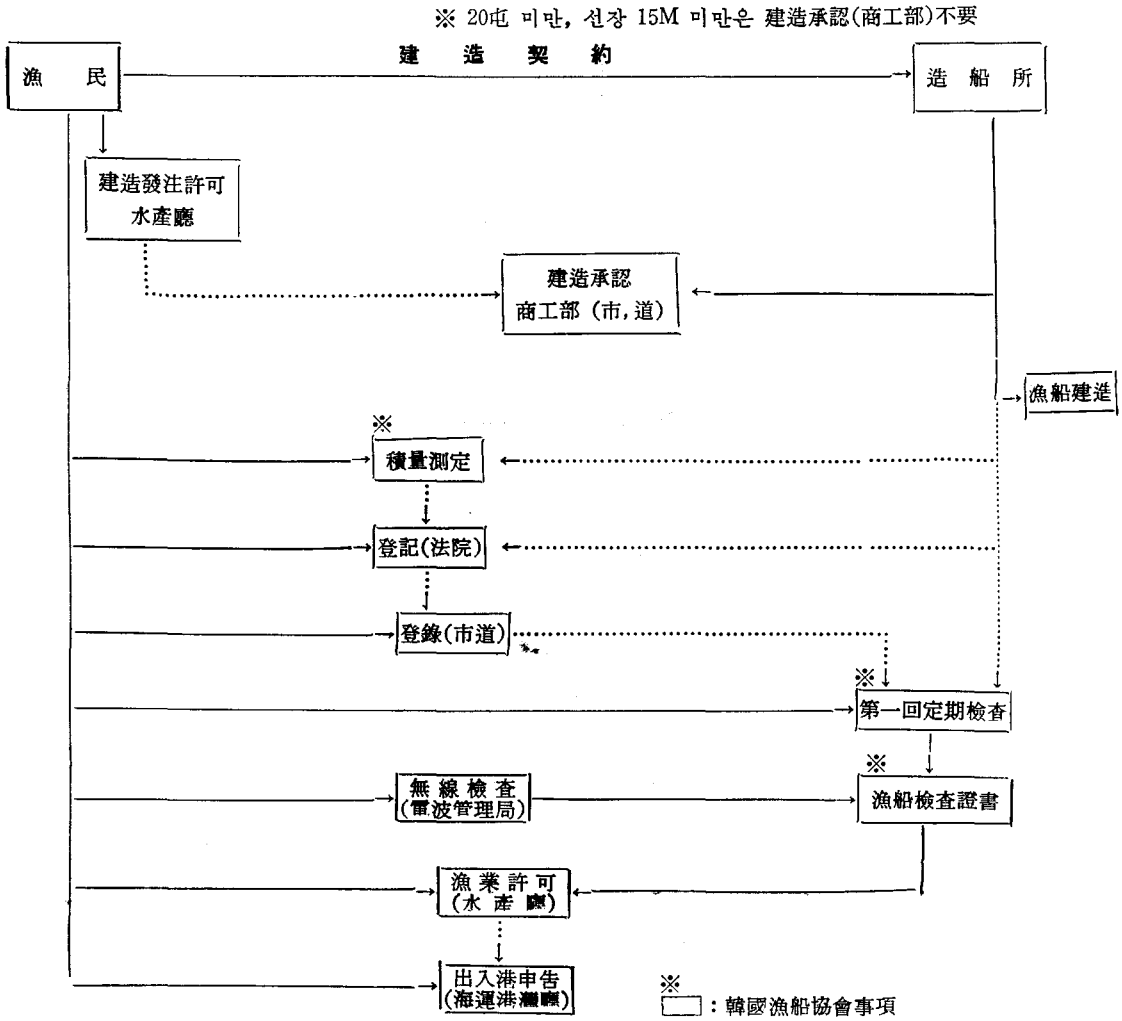

錄한다.

② 登錄에 의거 漁船法및 漁船設備規則에 의거 設備에 對한 第1回 定期檢查(最初의 定期檢查)를 받아 漁船檢查證書및 漁船檢查手帖을 發給받는다 (表 2參照)

※ 漁船檢查證書를 添付하여 市·郡및 水產廳에 漁業許可를 받아 出漁한다.

2) 50屯 以上의 漁船

實需要者(漁民)가 水產廳및 市·郡의 發註許可와 建造者(造船所) 名義의 商工部(市·郡의 工業課)의 建造承認을 받아 漁船製造着手부터 漁船協會에 다음事項에 대하여 檢查를 받아야 한다.

가) 建造者(造船所)는 發註許可및 建造承認書에 의한 漁船의 基本設計圖를 添附하여 漁船의 建造前에 製造檢查를 申請하여 製造착수때 부터 어선의 構造·性能 設備에 대한 檢查를 받아야 한다.

나) 建造者(造船所)는 漁船의 構造 性能 設備의 重要圖面을 承認 득한후 建造하여야 하며 機關 電氣및 의장품은 漁船法施行規則 第41條(豫備檢查)에 의게 生產工場에서 豫備檢查를 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建造者(造船所)는 漁船의 建造中 龍骨据置 肋骨設置 隔壁設置 外板設置 甲板設置 甲板上 構造物 設置와 前記 材料間의 接合및 機關据置 機關室配管 機關室設備 電線布設 電氣機器設置및 電氣設備 漁撈設備에 대한 檢查를 받아 製造檢查에 合格하여야 한다.

라) 漁船을 建造하여 進水하면 積量測定 申請

을 하여 積量測定證明書를 發給받아 法院에 財産登記하고 市·郡에 漁船을 登錄하여 國籍證書를 發給받는다.

마) 國籍證書 사본을 첨부하여 第1回 定期檢査를 申請하면 漁船法및 漁船設備規則에 의거 復原性 性能및 救命設備 航海用具및 法定備品에 대한 檢査를 받아 漁船檢査證書및 漁船檢査證書및 漁船檢査手帖을 發給받는다 (表 3參照)

表 3 新造漁船檢査 50屯 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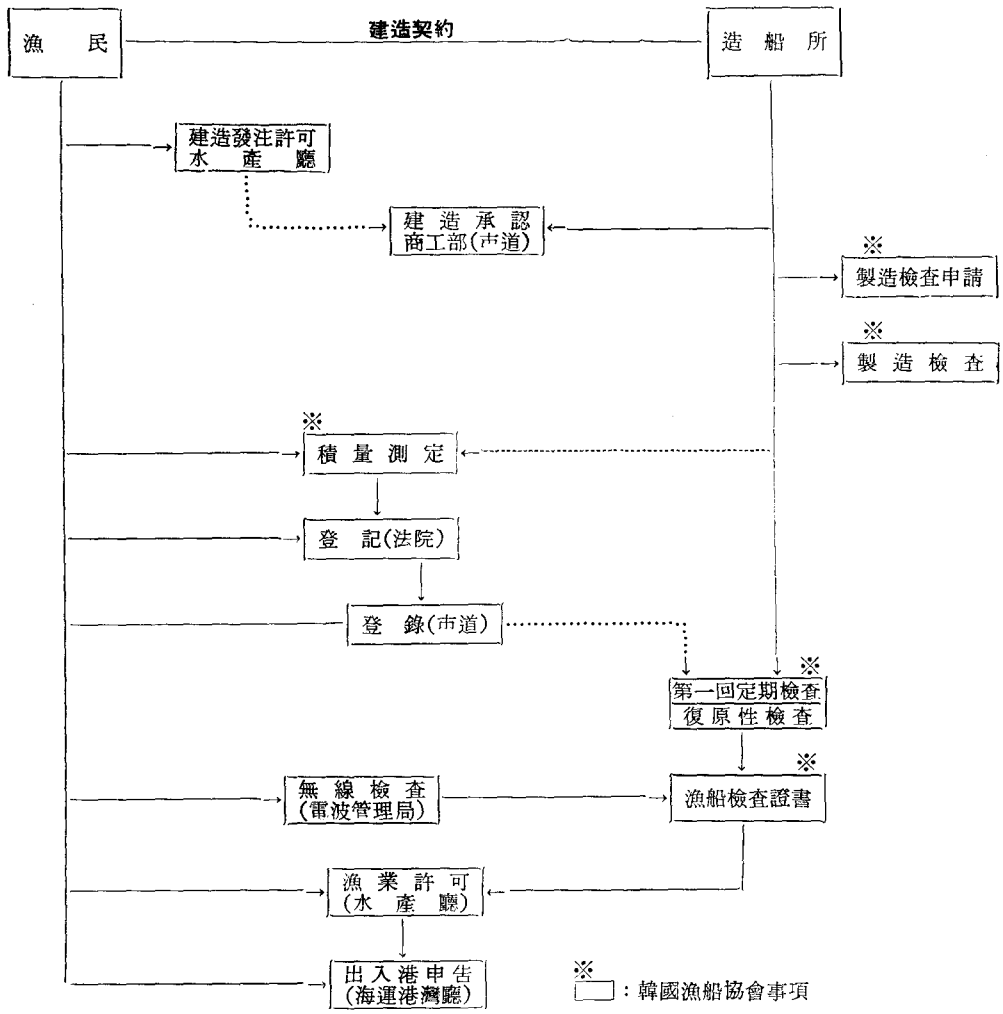

※ 最終으로 漁船檢査證書를 添附하여 水産廳및 市·郡에 漁業許可를 받아 出漁한다.

※ 10屯 이상의 어선은 漁船設備規則에 의거 無線電話(SSB)設備를, 100屯 以上은 無線電信設備를 하여야하며 漁船建造完了時(積量測定 申請時)에 당協會의 航行區域豫定證明書를 發給받아 電波管理局에 無線設備 設置許可를 받아야하며, 無線設備에 대한 許可및 檢査가 完了되어야 漁船檢査證書를 發給 받을수 있다.

나. 旣成船인 경우의 檢査

1) 50屯 미만의 漁船

50屯 미만의 어선을 建造하여 第一回定期檢査(最初의 定期檢査)에 合格하여 漁船檢査證書를 發給 받으면, 一年 期間으로 檢査證書를 發給받은 同一日字에 次期檢査(臨時檢査)를 指定받는다. 次期檢査日이 到來하여 檢査에 合格하면 一年後 同一日字에 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이

自然히 喪失하게된다. 따라서 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은 2年이다.

이때 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이 完了될때는 檢査證書를 添付하여 定期檢査를 받으면 漁船檢査證書를 再發給 받게되며 上記 서술한 바와 같은 節次를 反復한다.

※ 漁船檢査證書를 發給 받아 次期檢査日에 檢査를 받지 못하면, 漁船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이 있더라도 效力을 喪失하게 되므로 留意하여 次期檢査日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表 4.5參照)

2) 50屯 以上의 漁船

漁船檢査證書를 發給받으면 一年期間으로 檢査證書를 發給받은 同一日字에 次期檢査(第2種 中間檢査)를 指定받는다. 次期檢査日이 도래하여 檢査에 合格하면, 다시 1年 期間으로 同一日字에 次期檢査(第1種 中間檢査)를 指定받는다. 같은 節次로 第1種 中間檢査후 第2種 中間檢査에 合格하면 1年후 同一日字에 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은 자연히 喪失하게 된다. 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이 喪失하는때에는 檢査證書를 添付하여 定期檢査를 받으면 漁船檢査證書를 再發給 받게되며, 上記 敍述한 바와같은 節次를 反復한다. 따라서 50屯 以上 漁船의 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은 4年이며, 漁船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이 있더라도 指定檢査(次期檢査)를 받지 않으면 檢査證書의 效力을 喪失하게 되므로 指定檢査를 받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表 5,6參照)

表 4. **旣成漁船檢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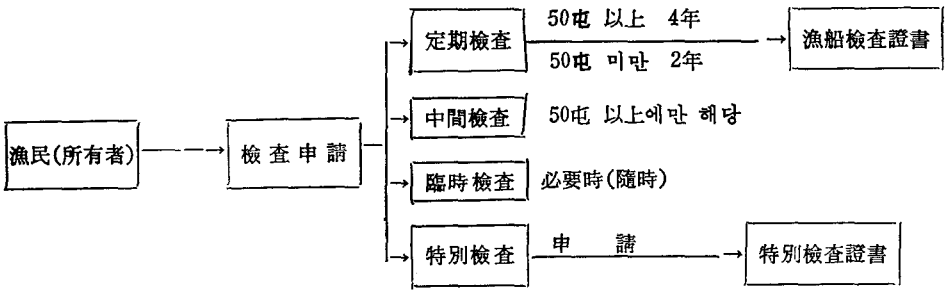

表 5. **旣成漁船檢査 (50屯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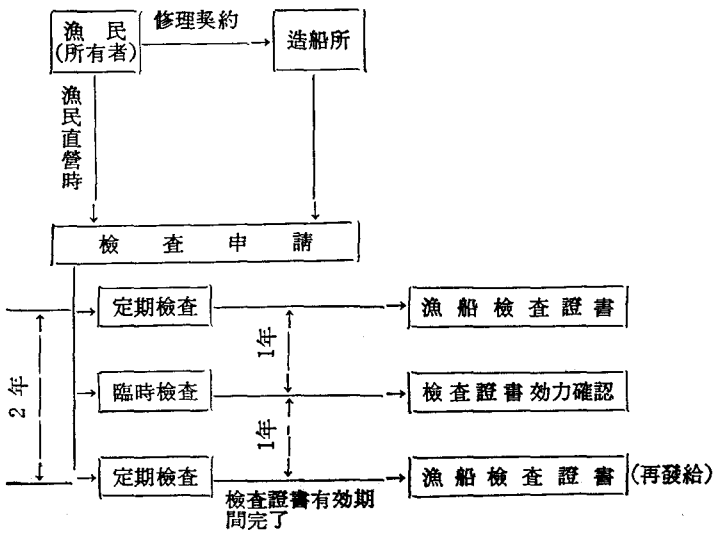

表 6. 檢成漁船檢査 (50屯 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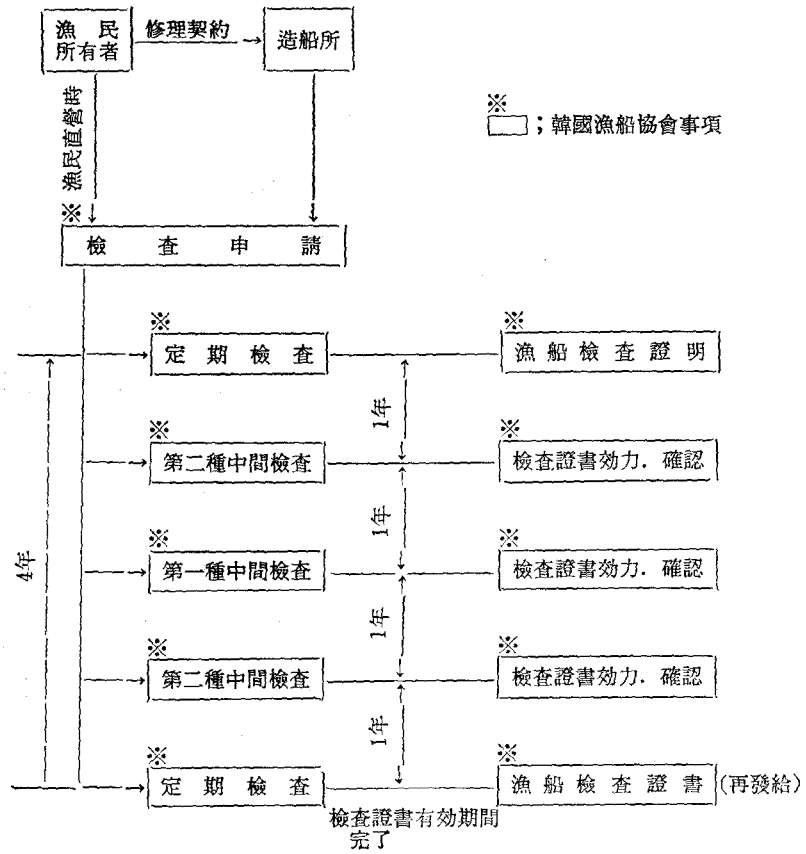

※ 法定檢査(定期, 中間檢査)의 사이에 臨時檢査가 지적되어 있을때는 지적된 일자에 臨時檢査를 받아야 檢査證書의 效力을 상실치 않는다.

다. 豫備檢査

漁船에 必要한 物品및 材料를 使用할때는 當協會의 豫備檢査(製造檢査)에 合格된 物品및 材料를 使用하여야 한다. 豫備檢査는 生產工場에서 生產過程부터 檢査를 받으며, 漁船法施行令 제9조2항및 同法施行規則 第41條에 의한 豫備檢査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1) 선체와 관련된 다음의 설비

가) 소형어선의 선체

나) 선미골재, 타두재 및 타심재

다) 창구의 타오포올린 및 해치보오드

라) 현창

마) 격벽 또는 갑판에 사용하는 방화용재

2) 기관에 관련된 다음의 설비

가) 내연기관

나) 가스터어빈

다) 보일러

라) 배기터어빈과 습기

마) 내연기관의 공기탱크, 강압유탱크, 시린더, 시린더라이나, 시린더카바, 피스톤, 크랭크축, 연접봉크로스헤드, 피스톤롯드 유냉각기, 물냉각기, 냉각펌프, 윤활유펌퍼및 공기압축기(수동식 이외의 것에 한한다)

바) 보일러의 급수펌프 및 분연펌프

사) 배기터어빈와 급기의 터빈차실·축익차·날개차·터어빈 날개 및 공기냉각기

아) 프로펠러, 중간축, 역전기축, 스라스트축 프로펠러축 및선미관

자) 프로펠러 축계의 클럿치·유채 카플링·탄성카플링 역전기 및 감속장치

차) 연료유이송 펌프 및 빌지펌프

카) 원격조정장치의 제어반

타) 유가열기

3)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와 관련된 다음의 설비

가) 유압조타장치

나) 닻(무게가 75킬로그램 이상의 것에 한하며 스토크앵카에 있어서는 스토크의 무게를 제외한다)

다) 쇠사슬(지름이 14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라) 로우프(와이어 로우프에 있어서는 지름이 14밀리미터 이상의 것, 와이어로우프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지름이 24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마) 유압펌프 및 유압전동기

4) 구명 및 소방설비와 관련된 다음 설비

가) 구명정 대빗트 및 구명정원치

나) 구명정

다) 단정

라) 낙하산불이 신호, 화전, 신호홍염 발연부 신호 및 자기발연 신호

마) 구명뗏목 및 구명부기

바) 구명부환 및 자기점화등

사) 구명동의

아) 구명줄 방사기

자) 승정장치

차) 소화펌프

카) 소화기 및 소화제

타) 화재탐지 장치중 탐지장치 및 경보장치

파) 수동화재경보장치

하) 가연성가스 검정기

거) 스프링 쿨러헤드

너) 자동식호흡구, 방연헬멧 및 방연마스크

더) 안전등

5) 항해용구와 관련된 다음의 설비

가) 선등 및 선등의 부품

나) 무중호각

6) 하역 기타 작업설비와 관련된 다음의 설비

가) 크레인

나) 원치

다) 유압펌프 및 유압전동기

라) 잠수시설의 내압각

7) 전기설와 관련된 다음의 설비

가) 발전기(정격출력이 1킬로왓트 또는 1킬로볼트암페아 이상의 것에 한한다)

나) 전동기(정격출력이 1킬로왓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변압기(정격출력이 5킬로볼트 암페아 이상의 것에 한한다)

라) 배전반(정격출력이 5킬로왓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아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마) 제어기(정격출력이 1킬로왓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할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바) 방폭형의 조명기구

사) 박용전선

8) 어로설비 및 처리가공설비

②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설비, 동호 "차목"의 설비중 프로펠러 및 프로펠러축, 동호 "카목"의 설비중 프로펠러축계의 역전기 및 감속장치와 동항제4호 "마목"에 게기한 설비를 개조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結　言

漁船檢査의 代行機關인 韓國漁船協會는 水產造船關係專門人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水產業 및 造船에 對한 實態를 理解하고 있으며 따라서 漁民을 理解하고 指導할 수있는 기관으로 自負心을 갖고 있으며 보다 安全하고 操業에 便利한 漁船의 建造補修, 維持에 積極 참여하여 漁業生產力의 增强과 漁民所得增大및 漁民의 人命과 財產의 保護에 이바지 하고져 하오니 어민들께서는 自身의 財產保護및 人命의 安全을 위해서라도 漁船檢査에 對한 準備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協助하여 주시기바라며 各支部및 出張所와 紐帶를 가지고 健全한 建議事項 및 애로사항을 協議하여 주시면 改善할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읍니다.